

우리나라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무역위원회(III)

조 석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 행정사무관

1. 서언

2. 우리나라 산업피해 구제제도 개관

- 1) 우리나라 수입관리 체계의 변천
- 2)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개념
- 3) 무역위원회와 산업피해 구제제도

3. 수입증가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

- 1) 조사절차
- 2) GATT Safeguard 제도
- 3)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과 지금 까지의 운영실적
- 4)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4.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제도

- 1) 조사절차
- 2) GATT의 반덤핑제도
- 3)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과 지금 까지의 운영실적
- 4)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4.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

1) 조사절차

전장에서 논술한 수입증가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본장에서 다룬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차이는 산업피해의 원인 행위가 되는 수입이 전자의 경우에는 일용 공정한 무역행위로 보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심각한 피해)이 적용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기준(실질적 피해)이 적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반덤핑 조사제도는 그 담당기관이 단일화되어 있는 나라(EC)와 2개 기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나라(미국, 캐나다 등)로 나뉘어 지는데, 우리나라의 제도는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무역위원회와 덤핑마진을 결정하는 관세청으로 되어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의 법적근거는 현행 관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제4조의 8, 그리고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운영규정인 재무부 고시 제92~18호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내산업에 이해 관계가 있는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의 신청내용은 덤핑물품의 수입 사실과 당해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

로 지연되는 것)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무역위원회는 그로부터 1개 월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 검토되는 것은 신청인의 제출자료가 상기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조사를 개시하되 관세부과 신청서가 충분한 자료를 포함하지 못하였거나, 덤핑 차액, 수입실적, 산업피해 등이 경미한 경우, 관세부과 신청자가 관세부과 요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조사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기각) 할 수 있다.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관세청에서는 덤핑여부 및 덤핑률을 조사하고 무역위원회에서는 산업피해 유무를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방법은 질문지조사, 현지조사 그리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조사는 최종판정시점 까지 6개월의 시한내에 종결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개시후 3개월내에 예비판정을 함으로서 잠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조사결과를 종합한 최종판정이 공정으로 내려지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따라서 덤핑조사에 소요되는 총기간은 8개월(240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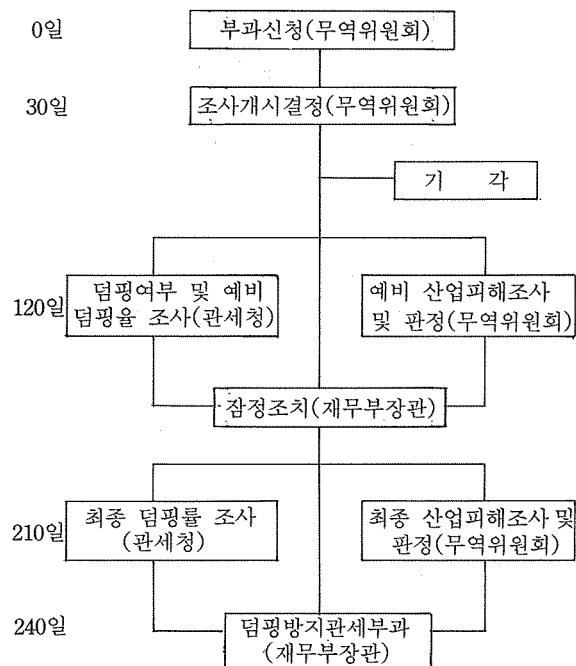
덤핑 및 산업피해조사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청의 덤핑률 판정은 정상가격에서 덤핑가격을 차감한 덤핑차액을 덤핑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 이때 정상가격이라 함은 수출국내의 통상거래가격→제3국 수출가격→구성가격의 순으로 적용하게 되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 모두 공장도 가격으로 환원하여 동일조건으로 조정하여 비교하며, 負의 덤핑가격은 0으로 간주하여 덤핑률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비시장경제권의 국가로 부터의 수입에 대한 덤핑률 산정시는 그

나라의 국내 시장가격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국의 시장경제국가를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여 그 나라의 국내시장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덤핑률을 산정한다.

산업피해 유무판정시에는 우선 혈흔하는 실질적 피해의 경우에는 국내생산, 판매, 시장점유율, 이익, 생산성 등 14개 지표를 근거로 국내산업의 상태를 분석하며 그것들이 덤핑수입으로 인해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을 받았는지를 검토하고 실질적 피해 우려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유휴생산능력, 대외수출가능성, 우리나라에의 수출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또한 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의 경우에는 국내산업이 안정적 경영상태에 접어들었는지 여부 등 별도의 기준을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절차를 요약하여 나타낸 그림이 표 4-1이다.

<표4-1>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절차도



2) GATT의 반덤핑제도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는 실질적으로 GATT 제6조 및 반덤핑 협정문(Anti-Dumping Code)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당초 덤픽문제에 대해서는 1916년 미국의 국제기본법에 의해 규제되기 시작하였는데 1960년대 들어와서는 덤픽행위보다는 반덤핑 관세 부과 행위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여 케네디라운드에서 GATT 제6조의 규정을 더욱 상세히 보완한 반덤핑 협정문이 1967년에 체결되었으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반덤핑 협정문의 개선보완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반덤핑관련 GATT규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덤픽의 결정 문제인데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소비되는 동종상품의 비교가능한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을 때 이 상품은 덤픽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덤픽결정에서 “동종상품”的 정의는 매우 중요한데 반덤핑협정문에 의하면 동종상품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상품 또는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당해상품의 특성과 극히類似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상품”으로 정의된다.

또한 정상가격은 수출국의 국내시장 가격,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등으로 결정하며 수출가격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가격의 조정을 하게 된다. 덤픽의 정의는 반덤핑조치의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반덤핑협정문에서는 각 용어에 대한 기본개념만을 서술하고 있어 각국간에 마찰의 소지를 가져다 주고 있다.

둘째, 피해의 개념 문제인데 덤픽에 있어서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는 세이프가드에서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보다 상대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해석

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GATT 규정은 피해의 개념을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우려, 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 등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세째, 반덤핑 조치문제인데 GATT는 반덤핑과세는 덤픽마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되어야 하며 적은 관세율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반덤핑관세가 덤픽마진율보다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절차에 관해서 GATT는 부과결정의 입증책임은 수입국의 조사당국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덤픽조사와 피해조사의 분리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3) 우리나라제도의 특징과 지금까지의 운영실적

우리나라 반덤핑관세제도의 특징은 첫째, 조사기관의 이원화이다. 반덤핑관세제도의 주요절차는 신청접수, 조사개시 결정, 예비판정, 최종판정, 구제조치시행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단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신청접수 및 조사개시 결정, 그리고 산업피해결정은 무역위원회가 운영하며 덤픽판정은 관세청이 그리고 구제조치는 재무부가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엄정한 조사 절차진행이라는 목적과 당초 반덤핑제도 운영이 재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기관의 일원화 또는 이원화 문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다만 한가지 문제는 동제도가 국내산업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미

국의 경우 덤픽판정 및 구제조치는 상무부에서 담당).

둘째, 제도운영에 있어서 확립된 관행이 모자란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의 역사가 일천하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는 행정절차법이 없는 반면에 반덤핑조사는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통상적 행정개념에 맞지 않는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무역위원회에서 조사한 사례를 보면 표 4-2와 같다.

<표 4-2> 덤픽조사 사례

○ 조사완료 : 4건

품목 및 제소	제소일자	조사개시	피해판정	최종조치
플리아크릴아미드 (이양화학)	'89.10.6	'89.12.26	'90.11.19 (부정) (조사종결)	'91.2.12
폴리아세탈수지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90.5.8	'90.7.16	'91.4.24 (긍정) (관세부과)	'91.9.14
정제인산 (정밀화학공업진흥회)	'92.7.3	'92.8.6	'93.1.28 (긍정) (관세부과)	'93.2.20
볼베어링 (한국정밀)	'92.7.6	'92.8.6	'93.1.28 (긍정) (관세부과)	'93.4.1 (피해판정일 부터관세부과)

○ 조사중지 : 3건

품목 및 제소	제소일자	조사중지	중지경위
D.C.P(대화정밀화학)	'88.6. 3	'88.12. 6	가격약속 연장제의 수락
알루미나시멘트 (유니온)	'88.8.29	'89. 8.17	가격약속 제의 수락
에이치산(풍국정유)	'92.6.29	'92.12.15	제소 철회

○ 조사중 : 2건

품목 및 제소	제소일자	추진현황
소다회(동양화학)	'93. 1. 29	예비긍정판정(68~70%)
PS인쇄판(웨스트산업)	'93. 3. 12	예비조사중

4) 제도활성화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일면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띠는 반덤핑제도가 지나치게 빈번히 활용되는 것은 국제통상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덤픽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주요 교역상대국에서 통상문제화하면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체제가 점점 더 개방화되고 사전적 산업 보호제도가 불가능하게 되는 시점에서 업계가 사후적으로 나마 산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이며 특히 덤픽수입은 그 자체가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정되므로 덤픽수입에 대한 구제조치는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업계가 덤픽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간혹 업계에서는 단순히 수입가격이 하락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덤픽제소를 하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덤픽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역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다음으로는 덤픽제도를 담당하는 직원 등의 전문성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천한 제도운영 역사와 담당직원의 빈번한 자리바꿈 등으로 아직도 우리나라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선진국 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기회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운영에 대한 국제적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반덤핑제도는 주로 미국·EC 등 선진국에 의해서 개발·발전되어 왔는 바, 이들 국가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한 제도의 개선발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